

中國 環境保護法の 歴史的인 展開와 環境保護法の 基本內容

金河祿*

< 차 례 >

- | | |
|--|---|
| <p>I. 序論</p> <p>II. 中國 環境保護法の 歴史的인 展開</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環境保護法の 제정을 위한 準備段階2. 環境保護法の 發展初期3. 급속도로 進행된 環境保護法の 새로운 發展時期4. 體制轉換을 맞이하게 된 中國 環境保護法の 새로운 發展 <p>III. 中國 環境保護法の 基本인 原則과 基本制度</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中國 環境保護法の 基本 原則2. 中國 環境保護法の 基本 制度 | <p>IV. 中國 環境保護法の 體系</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環境保護에 관한 憲法 規定2. 環境保護에 관한 基本法律3. 環境 및 資源의 保護에 관한 單行法4. 國가의 기타 法律에 내포된 環境保護에 관한 法律5. 國務院에서 制定한 環境 保護에 관한 行政法規6. 環境保護에 관한 地方法規 <p>V. 結語</p> |
|--|---|

I. 序 論

17-18세기 産業革命의 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社會적인 生産能力의 향상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거대한 경제

* 중국 연변대학 교수

발전성과를 취득하게 되었다. 産業革命의 발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게 된 社會적인 生産能力의 향상은 인류의 生産 및 生活方式를 크게 향상시켜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生産活動과 生活이 依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貴重한 地球環境에도 커다란 損傷을 주게 되었다.

人類의 모든 生産활동과 생활이 의존하고 있는 地球環境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존재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지구환경에 대하여 반드시 확실한 조치를 취하여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환경에 대하여 확실한 보호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제발전을 포기하거나 멈춰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면서도 효율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이미 세계적인 과제로 되었다. 지속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면서도 효과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은 법률적인 규범을 주요한 수단으로 하여 효율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하게된 이후로부터 네 가지 현대화의¹⁾ 실현을 목표로 효과적으로 경제건설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이미 커다란 성과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중국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많은 환경문제를 봉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은 경제 및 사회의 발전을 계속 추진함에서도 효율적으로 환경의 毀損을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헌법에 환경보호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환경보호를 나라의 기본적인 국책으로²⁾ 確立하게 되었고, 그리고 환경보호

1) 네 가지 현대화는 공업의 현대화·농업의 현대화·국방의 현대화 및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포함하고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2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나라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오염과 기타공해를 방지한다.”

에 관한 기타 많은 법률과 법규도 제정하고 실시하게 되어 체계가 비교적 건전한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II. 中國 環境保護法の 歷史的 展開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로부터 시작하여 중국의 환경보호법은 이미 거대한 발전성과를 취득하게 되었다. 중국 환경보호법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20세기 60-70년대에 많은 曲折을 거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기본적인 발전추세는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날로 완벽하게 되었고 그리고 WTO의 가입으로 인해 향후에는 더욱 완벽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지속된 중국 환경보호법의 발전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개의 발전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環境保護法の 제정을 위한 準備段階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부터 1973년 전국 제1차 環境保護會議의 소집까지 이 시기는 중국 환경보호법의 발전초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중국 환경보호법의 발전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列舉할 수 있다.

첫째 환경입법에 있어서 이 시기의 입법은 農業生産에 관한 自然要素에 대하여 自然資源의 公有制확립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중국헌법 즉 1954년 중국에서 최초로 제정하게된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바 있다. “地下資源·河川 그리고 법률의 규정으로 인해

나라에서 소유하게된 森林·荒地 및 기타 자원은 모두 全民이 所有하게 된다.”

둘째 자연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이 시기의 환경보호에 관한 입법은 地下資源·森林·土壤 등 자연자원에 대한 관리를 중시하고 그리고 상응한 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제정한 주요한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는 1950년에 제정한 <中華人民共和國鑛業條例>; 1953년에 제정한 <國家建設土地征用方法>; 1957년에 제정한 <中華人民共和國水土保持暫行條例> 등이 있다.

셋째 環境汚染의 방지에 있어서 이 시기 환경보호와 연관된 주요한 입법은 다음과 같다. 1956년 衛生部和 國家建設委員會에서 공동으로 제정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실시하게된 <工業企業設計暫行衛生標準>; 1956년에 제정하게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첫 번째로 되는 산업汚染防止에 관한 법률 <工廠安全衛生規程>; 1959년에 제정한 <生活飲用水衛生規程> 및 <放射性工作衛生防護暫行規定> 등이 있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시기 환경보호에 관한 중국의 입법은 환경보호와 연관된 주요한 내용은 이미 모두 환경보호에 관한 입법에 반영하게 되었고 자연자원의 보호에 대하여도 많은 규정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 환경보호에 관한 입법은 環境毀損 및 環境汚染의 방지에 대하여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중국의 환경보호는 經濟行政과 衛生行政에 歸屬되었으므로 비교적으로 체계화를 이룬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체계는 형성되지 못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입법은 분산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다.³⁾

3) <環境法學> 金瑞林 북경대학출판사 1999년 제54-55면을 참조하였음

2. 環境保護法の 發展初期

1973년 제1차 全國環境保護會議의 소집으로부터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제3차 全體會議의 소집까지 이 시기는 중국 환경보호법의 발전 초기라고 할 수 있다. 1973년에 소집된 제1차 全國環境保護會議는 환경보호에 관한 문제를 나라의 한 가지 중대한 과제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의 환경보호기본법에 해당하는 <환경을 보호하고 改善할 데에 관한 若干規定>을 제정하게 되었고 “國務院環境保護領導小組”⁴⁾라고 하는 環境保護機關도 처음으로 設立하게 되었다.

이 시기 중국 환경보호법의 발전상황을 보면 1974년에는 <中華人民共和國沿海水域污染防止暫行規定>을 제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중국에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많은 政策과 綱要도 제정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1978년에 改正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은 제11조에 “나라는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호하며 오염과 기타 공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게 됨으로 구체적인 환경보호법의 형성에 헌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시기 중국에서 진행된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적인 제도건설의 또 하나의 주요한 성과는 많은 구체적인 環境標準의 제정이다. 이 시기에 제정된 주요한 環境標準은 <産業 “3廢”의 排出에 관한 標準>⁵⁾·<生活 飲用水에 관한 衛生標準>·<食品衛生標準>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급속도로 진행된 環境保護法の 새로운 發展時期

1979년 <中華人民共和國環境保護法(試行)>의 제정으로부터 1989년

4) 國務院環境保護領導小組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설립하게 된 國家級에 해당하는 環境保護行政機構이다.

5) “3廢”라고 하는 것은 廢物·廢水·廢氣를 의미한다.

<中華人民共和國環境保護法(試行)>의 改正까지 이 시기는 가속도로 진행된 중국 환경보호법의 새로운 발전시기 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중국 환경보호법의 발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환경보호에 관한 입법에 있어서 중국은 1979년 환경보호기법으로 되어있는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시행)>을 제정하여 실시하게 되었고 1982년에는 헌법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이 헌법의 개정안에는 환경보호에 관한 조항의 개정도 포함하게 되었다. 1982에 개정된 헌법의 환경보호조항은 개정이전의 헌법 환경조항과 비교하여 볼 때 개정후의 환경보호조항은 환경의 내용 및 범위를 크게 확대하게 되었고 그리고 自然資源의 이용에 관한 조항도 새로 增加하여 규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헌법의 개정은 향후 중국에서 폭이 더욱 넓은 범위에서 환경보호입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헌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環境汚染防止에 관한 입법에 있어서 중국은 1982년에 <海洋環境保護法>을 제정하게 되었고 1984년에는 <水質汚染防止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7년에는 <大氣汚染防止法>을 제정하게 되었고 1989년에는 <環境騒音汚染防止條例>⁶⁾을 제정하게 되어 환경오염의 방지에 있어서 체계화를 이룬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체계를 마련하게 되었다.

自然資源에 대한 관리와 보호에 있어서 이 시기 중국은 1982년에 <水土保持工作條例>⁷⁾을 제정하게 되었고 1984년에는 <森林法>; 1985년에는 <草原法>; 그리고 또 1986년에는 <漁業法>·<鑛產資源法>·<土地管理法> 등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1988년에는 <水法>과 <野生動物保護法> 등도 제정하게 되어 자연자원의 보호에 관하여 체계적인

6) 이 조례는 1996년에 <環境騒音汚染防止法>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7) 이 조례는 1991년에 <水土保持法>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법률제도를 구축하게 되었다.

自然環境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중국은 1982년에는 <汚染物質 排出費 徵收에 관한 暫行方法> 제정하였고; 1983년에는 <全國環境에 대한 監視管理條例>와 <環境保護標準에 관한 管理方法>을 제정하였으며 그리고 1985년에는 <資源의 綜合적인 利用 若干問題에 관한 暫行規定>도 제정하게 되었다.

이 시기 환경보호에 관한 입법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제정된 기타 법률 즉 <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中華人民共和國刑法> 등에도 환경보호에 관하여 구체적인 조항을 규정하게 되었다.

이 시기 중국에서 진행된 환경보호에 관한 입법상황을 보면 앞에서 이미 살펴보게 된 많은 입법을 제외하고도 중국정부는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과 합작에도 積極參與하여 많은 나라들과 환경보호에 관하여 많은 協定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환경보호에 관한 많은 國際적인 公約 등에도 가입하게 되었다.

4. 體制轉換을 맞이하게 된 中國 環境保護法の 새로운 發展

20세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경제체제는 社會主義計劃經濟體制로부터 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은 환경보호법을 어떻게 더욱 완벽한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와 이미 제정한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社會主義市場經濟制度의 운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改正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동시에 맞이하게 되었다.

환경보호법의 새로운 발전시기를 맞이하면서 同時에 직면하게 된 상

술한 과제를 成功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하여 중국은 다음 같은 措置를 취하게 되었다.

첫째 1989년 중국은 <環境保護法(試行)>을 <環境保護法>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1989년에 진행된 환경보호법에 대한 개정은 법률이라고 하는 이름만 바꾸게된 것은 아니고 환경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도 이미 있어 편 내용을 큰 폭으로 개정하였거나 혹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게 되었다.

둘째 1992년 UN에서 소집된 환경 및 발전에 관한 대회의 開催를 계기로 중국은 <중국의 환경 및 발전에 관한 10가지 대책>을 제정하고 그리고 <중국 21세기 議程---중국 21세기 인구·환경 및 발전에 관한 백서>도 발표하게 되었다.

셋째 20세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環境保護에 관한 많은 單行 法律도 새로 제정하거나 改正하게 되었다. 새로 제정한 법률로는 <防沙治沙法> 등이 있고 그리고 개정된 법률로서는 <海洋還境保護法> 등이 있다.

Ⅲ. 中國 環境保護法の 基本原則과 基本制度

1. 中國 環境保護法の 基本原則

환경보호법의 기본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보호와 지속적 인 경제발전의 실현을 취지로 그리고 환경보호에 관한 모든 법률·법규와 환경보호법의 사법과정에 반드시 貫徹되어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準則을 의미한다. 중국의 환경보호법에 내포되어 있는 환경보호법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調和를 이루는 發展의 原則

조화를 이루는 발전의 원칙은 경제 및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경제 및 사회발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면 모든 經濟建設項目의 추진은 반드시 이 항목의 환경보호시설과 同時에 設計하고·同時에 建設하여야 하며 그리고 또 同時에 竣工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경제·사회 및 환경 이 삼자가 일치된 효과를 이루어 내어야 한다.

2) 預防을 重視하고, 預防과 除去를 同時에 推進하여야 한다는 原則

預防을 중시하고 그리고 預防과 除去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는 환경보호법의 기본원칙은 환경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 보호의 重點을 반드시 事前의 예방에 두어야 하고 그리고 環境毀損에 대한 예방과 이미 조성된 環境毀損에 대한 제거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환경입법에서 이러한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게 된 근본적인 理由는 환경은 일단 毀損을 받게되면 毀損의 제거는 많은 투자가 소요되며 극히 어렵거나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3) 合作 및 協同의 原則

합작 및 협동이라고 하는 환경보호법의 원칙은 경제 및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환경에 대하여 효율적인 보호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부동한 국가기관·부동한 지방 그리고 중국과 가타 나라 사

이에 효과적인 합작과 협동 즉 효과적인 기술 및 정보 등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보호에 있어서 합작 및 협동을 하나의 법률적인 원칙으로 설정하게된 근본적인 이유는 환경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의 커다란 統一體이고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는 국가 및 세계적인 課題이기 때문이다.

4) 公衆參與의 原則

환경보호에 관한 모든 사무는 社會公衆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환경보호법의 원칙은 사회의 모든 公衆은 일정한 절차 및 형식으로 의해 자신의 環境利益과 연관된 決策活動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社會公衆의 참여한 環境決策活動으로 도출하게된 環境決策은 반드시 公衆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환경보호법에서 환경보호의 公衆참여를 하나의 중요한 법률적인 원칙을 확립하게된 것은 사회적인 民主理念을 환경보호영역에서 貫徹하게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2. 中國 環境保護法の 基本制度

소위 환경보호법의 기본제도라고 하는 것은 환경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達成하고 그리고 환경보호법의 基本原則을 遵守하기위해 환경보호 입법에 포함하게 되었고 그리고 구체적인 환경보호법률과 법규로 표현되고 있는 환경보호에 대해 重大하고 普遍的인 指導의미를 가지게 되는 법률적인 제도를 의미하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법의 구체적인 규정을 보면 중국의 환경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基本制度를 규정하고 있다.

1) 環境保護에 관한 計劃制度

중국의 환경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제도는 나라 및 지방인민정부에서 법으로 규정된 일정한 절차에 의해 環境質量統制·汚染物質의 排出統制·汚染物質의 除去·自然生態의 保護 그리고 기타 환경보호와 연관되어 있는 계획을 의미한다. 환경보호계획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일정한 시기 환경에 대한 보호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취하게 될 구체적인 조치이다. 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제도는 중국의 환경보호법에⁸⁾ 규정되어 있는데 그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환경질량통제에 관한 계획

나. 오염물배출통제에 관한 계획

다. 오염물제거에 관한 계획

라. 자연생태보호에 관한 계획

2) 環境影響에 관한 評價制度

소위 환경영향에 관한 평가제도 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하여 일정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든 건설항목에 대하여는 건설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의 조사 예측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리고 가능하게 나타나게 될 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률적인 제도를 의미한다.

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제도는 중국의 환경보호법 제13조에 규정되어있고 그리고 이 제도는 중국의 기타 환경보호법 즉 《中華人民共和國水質汚染防止法》 등에 의해 補完되고 있다.

8)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 제4조 제12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3) “三同時”制度

“三同時”라고 하는 제도는 자연환경에 대하여 일정한 영향을 가져다 주게 될 모든 基本建設項目·技術改造項目과 區域적인 開發項目의 실시에 있어서 환경보호에 관한 施設은 반드시 主體工程(本工程)과 동시에 설계에 들어가야 하고 동시에 건설되어야 하며 그리고 또 동시에 竣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환경보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三同時”는 중국 환경보호법의 제26조에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의 중점을 同時竣工에 두고 있다.

4) 汚染物質排出登記制度和 汚染物質排出許可制度

汚染物質排出登記制度는 기업에서 直接 및 間接적인 방식으로 환경에 汚染物質(騒音을 포함)을 배출 할 경우 기업은 法定節次에 따라 汚染物質排出의 구체적인 상황을 반드시 環境保護管理機關에 申告하고 登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汚染物質排出許可制度는 기업의 산업활동으로 인해 환경에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 모든 기업과 개인은 반드시 事前에 이 것을 環境保護管理機關에 申告하고 登記하여야 하며 그리고 環境保護管理機關의 批准을 걸쳐 “排出許可證”취득하게 된 후에 야만 오염물질을 환경에 배출할 수 있다는 제도이다.

5) 環境에 대한 監視制度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의 입법으로 의해 확립하게 된 환경에 대한 감시제도는 효율적인 환경에 대한 보호를 취지로 環境保護管理機關에서 일정한 法定節次에 따라 物理·化學 및 生物 등 기술적인 수단으로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환경요소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감시하는 과학적

인 감시활동을 의미한다. 중국의 환경보호법에 의하면 환경에 대한 감시는 환경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감시·환경재난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환경감시·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감시 이 세 가지 감시로 나누고 있다.

6) 汚染物質排出의 有料制度

오염물질배출의 유료제도는 환경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기업 및 개인에 대하여는 그 배출물의 品質과 數量에 따라 일정한 排出料를 收取하도록 한다는 제도를 의미한다. 환경보호법에 의하면 環境保護管理機關에서 收取하게된 排出料는 반드시 환경보호에 이용되어야 한다. 오염물질의 배출에 관하여 중국에서 배출의 유료제도를 확립하게된 것은 중국의 환경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가 오염을 조성하였으면 누가 이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환경보호원칙의 구체적인 체현이라고 생각한다.

7) 現場檢査制度

현장검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환경보호법에 의해 환경보호관리기관과 그의 任員은 法定節次에 의해 汚染物質을 배출하고 있는 오염물의 배출상황을 주요한 내용으로 排出現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중국 환경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면 오염물질배출상황에 관한 현장검사는 각급 인민정부의 환경보호관리기관에서 설립한 環境監理機關에서 실시하게 되어있다.

8) 强制적인 除去措置

중국의 환경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오염의 제거에 관한 강제

적인 제거조치는 환경보호관리부문의督促에도 불과하고 장기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그의 汚染源의 제거에 일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제거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기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汚染源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생산의 정지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汚染源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IV. 中國 環境保護法の 體系

환경보호법의 체계는 환경을 보호하고 그리고 환경의 개선을 취지로 규정된 모든 법률과 법규로 의해 구성된 법률적인 규범의 통일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시각으로 볼 때 중국의 환경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구성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1. 環境保護에 관한 憲法 規定

헌법은 나라의 법률체계에 있어서 최고위급에 처하여있고 그리고 나라의 근본법으로⁹⁾ 작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환경보호법을 포함한 나라의 모든 법률은 반드시 헌법에 부합되어야 하며 헌법과 抵觸되어서는 아니 된다.

1982년에 제정된 중국의 현행헌법은 환경보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9) 중국에서는 법률은 根本法 基本法 一般法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헌법은 나라의 根本法이라고 하고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은 基本法이라고 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은 一般法이라고 한다.

규정하고 있다. “나라는 생활환경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여야 하며 그리고 오염과 기타공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중국의 헌법에서 규정하게된 상술한 내용은 중국에서 환경보호에 관하여 확립하게된 기본적인 정책이며 그리고 또 상술한 규정은 중국에서 환경보호는 이미 나라의 기본적인 職能으로 되었다는 것도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현행 헌법은 환경보호에 관하여 상술한 바와 같은 기본적인 규정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연자원과 動植物의 보호 등 기타 환경요소의 보호에 관하여도 원칙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상술한 내용과 같은 중국헌법의 규정은 중국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활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환경보호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는데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 環境保護에 관한 基本法律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을 의미한다.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로서 환경보호의 목적·범위·기본원칙·중요한 조치·관리제도·조직기구 그리고 법률적인 책임 등에 대하여 원칙적인 규정을 하고 그리고 환경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로서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가. 환경보호법의 의무에 관한 규정

나. 환경보호법의 보호대상에 관한 규정

다. 환경보호의 기본원칙과 제도

라. 자연환경보호에 관한 기본요구와 환경자원을 이용하는 자의
법적인 의무

마. 환경보호기관의 권한과 의무

바. 환경보호법을 위반시의 법적인 책임

3. 環境 및 資源의 保護에 관한 單行法

환경 및 자원의 보호에 관한 單行法은 나라의 입법기관에서 특정한 환경오염의 방지 및 특정한 환경요소의 보호에 관하여 제정한 단행법을 의미한다. 환경 및 자원의 보호에 관한 이러한 단행법은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률처럼 全面적이고 綜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모두 구체적이고 그리고 특정한 조절대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 환경보호법의 실태를 보면 환경 및 자원의 보호에 관한 단행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환경에 대한 오염과 公害에 대한 통제를 취지로 하는 單行法. 현재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大氣汚染防止法> <水質汚染防止法> 그리고 <水土保持法> 등은 이에 해당하다.

둘째는 자연자원에 대한 관리와 생태환경에 대한 보호를 취지로 하는 單行法. 현재 중국에서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野生動物保護法> <土地管理法> <草原法> <森林法> 그리고 <漁業法> 등은 이에 해당하다.

이론적으로 볼 때 환경 및 자원의 보호에 관한 단행법은 환경보호기본법에 비하여 하위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환경의 특정한 요소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의 優位원칙에 의해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에 비해 우선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국가의 기타 法律에 내포된 環境保護에 관한 法律

환경보호를 포함한 환경에 관한 모든 문제는 많은 사회적인 관계와 결합되어 있다. 그리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문제는 중국의 환경보호기본법과 환경보호에 관한 단행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民法¹⁰⁾·刑法¹¹⁾·農業法·對外貿易法 등 기타의 많은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에서 환경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게된 내용도 역시 환경보호법의 중요한 構成部分이라고 생각한다.

환경 및 자원의 보호에 단행법에 비교하여 볼 때 기타법률에 내포된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나라의 기본법률에 내포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라의 일반법률에 내포되어있을 수도 있다.

5. 國務院에서 制定한 環境保護에 관한 行政法規

국무원에서 제정한 환경보호에 관한 행정법규는 국무원에서 헌법과 법률의 授權을 근거로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의해 환경 및 자원의 보호에 관하여 제정한 행정법규를 의미한다.

중국의 환경보호입법은 건국이후로부터 많은 발전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환경보호법은 아직도 발전과정에 처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환경보호법률에는 아직은 많은 공백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은 이러한 법률의 공백을 제거하고 환경 및 자원의 보호를 추진하

10) 중국의 民法通則 제81조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데에 관한 규정·제83조 인접관계에 관한 규정·제123조 제124조 환경권의 侵害에 관한 규정 등은 환경보호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다.

11) 중국의 형법 제155조 밀수에 관한 규정·제338조 환경자원 毀損罪에 관한 규정 등도 환경보호법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기 위해 국무원 및 국무원에 소속된 行政管理部門(행정부·처에 해당함)에 환경 및 자원의 보호에 관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다.

국무원에서 이미 제정한 환경 및 자원의 보호에 관한 행정법규는 환경 및 자원의 보호에 관한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것은 국무원에서 제정한 환경 및 자원의 보호에 관한 행정법규는 법률의 효력에 있어서는 환경 및 자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비교하여 하위에 처하고 있다.

6. 環境保護에 관한 地方法規

중국의 국가 환경보호입법은 전국의 환경 및 자원의 보호를 그의 조절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러한 법률과 법규는 전국범위에서 공동점이 있는 내용에 대하여만 규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각 지방의 特殊性에 대하여는 고려되지 않고 있으므로 중국은 국가 환경보호법의 이러한 부족을 환경보호에 관한 지방법규의 제정과 실시로 보완하고 있다.

중국의 법률체계를 보면 지방법규는 나라 법률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또 상위에 있는 전국적인 법률에 저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환경보호에 관한 중국의 지방법규는 그의 입법기관 및 효력의 차이로 인해 환경보호에 관한 地方法規와¹²⁾ 환경보호에 관한 地方規章으로¹³⁾ 나누어진다.

12) 地方法規는 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규를 의미한다.

13) 地方規章은 지방정부에서 제정한 법규를 의미한다.

V. 結 語

중국의 환경보호법은 건국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지금은 이미 체계가 비교적 完整한 법률체도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중국 환경보호법의 이러한 발전은 중국의 경제 및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아주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되었다.

중국의 환경보호법은 수 십 년의 발전을 걸쳐 이미 커다란 발전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환경보호법은 중국의 경제개발이 가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보호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으므로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고 생각한다.